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단71926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구

담당변호사 진종삼, 정영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변론 종결 2018. 7. 20.

판결 선고 2018. 8.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43,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983,3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자매인 원고와 피고는 2002. 10. 31.경부터 서울 강남구 C 대 447.6㎡ 및 그 지상의 모텔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지분을 취득하기 시작하여 2005.11. 29.에는 위 대지 및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원고는 2/3 지분을, 피고는 1/3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12. 1.경 피고가 남편인 D와 함께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되, D은 운영대가로 운영수익금에서 매달 5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운영수익금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이익금 중 2/3를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이익금이 분배되었다.

다. 원고는 2013년 8월경부터 피고와 D이 전체 모텔운영수익금 중 일부금액만 기준으로 한 분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주장이 계속되는 중에 원고 측의 신고로 인하여 국세청은 이 사건 모텔 운영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다.

라. 국세청은 이 사건 모텔이 운영된 기간 동안의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위 모텔 경영으로 얻었을 수입을 추산한 다음 그 추산수입금에서 피고와 D이 당초에 신고한 수입금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누락된 수입금을 산출하였고, 각 과세관청은 2014. 5. 1.부터 2014. 5. 12.까지 위 누락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모텔의 공동경영자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각 납부기한을 2014. 5. 31.로 정하여 부과하였다(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전체 세액 중 원고의 사업지분인 2/3에 해당하는 금액만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나, 부가가치세는 원고와 피고에게 연대납세고지를 하였다). 그 중 부가가치세 부과액은 합계

299,215,110원인데, 피고와 D의 고의 · 과실에 의한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합계 121,783,552원이고 추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본세가 177,431,558원이다.

마.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299,215,110원을 전액 납부하였고, 피고와 D를 상대로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된 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2. 3.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위 가산세 121,783,552원은 피고와 D의 과소 신고로 인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피고와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도 소득 축소신고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와 D은 공동하여 위 가산세의 70%에 해당하는 85,248,486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가가치세 연대납부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원고가 납부한 위부가가치세액 299,215,110원 중 관련판결에서 피고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85,248,486원을 제외한 213,966,624원의 1/2 상당액인 106,983,312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에게 부과되어 납부한 위 부가가치세액 299,215,110원 중 가산세121,783,552원에 관하여는 이미 관련판결에서 피고와 D의 과소신고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과실이 30% 참작되어 피고에게 70%의 배상책임이 확정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가산세 중 원고의 과실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본세 177,431,558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른 금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11. 21.자로 체결되어 작성된 '공동사업계약서' 제5조에서 "공동사업인은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소유지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부가가치세 본세 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모텔 소유지분인 1/3 상당을 구상할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동사업계약은 이 사건 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어서 거기에 정하여진 부담비율이 적용될 수 없고 연대채무의 일반원칙에 따라 부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동사업계약서가 이 사건 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취득하게 될 임료 수입 및 경비의 분배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따른 수입과 경비의 부담 비율에 관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과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모텔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한편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동사업계약에 정하여진 것과 같이 이 사건 모텔 운영에 따른 순이익금으로 피고가 신고한 금액 중 원고의 소유지분인 2/3 상당을 분배받아 온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공동사업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에 따른 수입과 비용의 분배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보아야할 것이고(그 뒤 피고와 D이 직접 모텔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동업약정에 관한 약정서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않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를 통한 세금의 부담에 관하여 위 공동사업계약 이외의 다른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그에 따른 부담비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9,143,852원(= 177,431,558원 × 1/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7.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고종영